「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질의 답변

□ 서면질의 답변 (1차)

※ 질의사항의 쪽표기 및 조항은 질의자의 기준을 적되, 오류가 확인된 사항은 수정하였음.

연번	지침서		질의	답변
	쪽	조항		
1	8	제6조 ④	• 사업신청자의 최대2개 이상의 핵심사업자 확약서 제출 가능여부. 위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평가 가산점 획득 가능 여부	▸ 핵심사업자는 영상·문화 복합단지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2개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 제6조 제4항에 따라 핵심사업자 2개를 초과하여 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핵심테넌트의 경우에는 다수의 제안이 가능합니다.
2			• 외국인투자로 출자하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의 설립연도 자본금 업종 등의 제한사항 존재 여부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년도, 자본금 등의 자격 제한은 없으나 사업신청자 평가분야에서 평가대상입니다.
3	2, 12	제2조 ① 제9조 ②	• 지침서상의 스튜디오 면적으로 제시된 1,000평, 7,000평은 스튜디오로 사용되는 순수한 면적인지, 아니면 부속실(화장실 등)을 포함한 면적인지?	▸ 실내스튜디오의 건축연면적 기준은 영상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순수 면적으로 공용면적(부속창고, 복도, 지하주차장 등)은 불포함 면적 기준입니다. ※ 제2조 제1항 제13호의 대형스튜디오는 1개 스튜디오 면적이 1,000평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4	3	제2조 ①	• ""핵심테넌트"라 함은 핵심도입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법인으로~" 에서 핵심사업자와 별도로 핵심테넌트의 경우 그 자격조건이 특정되거나 규정되지 않는지?	▸ 핵심테넌트는 자격조건을 특정하거나 규정하지는 아니하나 공모지침서의 핵심테넌트 정의(핵심도입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법인으로 핵심도입시설의 단순 사용이 아닌 장기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핵심도입시설을 실제 사용하게 될 앵커테넌트)에 따라 핵심도입시설을 장기간 사용하게될 입주사 혹은 조성에 특정 기술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파트너로서 평가항목 "핵심테넌트 유치 계획"에서 평가 대상이 될 내용입니다.

5	7	제5조 ③	• “사업신청자는 지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얻은 개발이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핵심도입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그 규모와 방법 등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에서 지원시설용지 개발이익의 일정금액에 대한 최소 기준 금액 또는 비율이 있는지?	▸ 최소 금액 및 비율의 기준은 없으나 평가항목 "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 규모"에서 평가대상이 됩니다.
6	8	제6조 ②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 컨소시엄 참여자 수의 제한은 없는지?	▸ 제6조 참가신청 자격 및 조건 외에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단, "출자자 구성" 평가항목에서 평가대상이 되므로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7	8	제6조 ④	• “핵심사업자(최대 2개)의 운영 확약을 받아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에서 핵심사업자별 최소 지분율 기준이 있는지?	▸ 핵심사업자의 최소 지분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사업자가 투자하지 아니하고 확약서만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핵심사업자 참여도" 평가항목에서 출자여부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핵심사업자가 출자하지 않는 경우, 운영을 확약한 바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확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8	9	제7조 ②	•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들(출자자의 대표자)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공증된 위임장을 받아 주관사 대표자 명의로 산청신청을 하여야 하며”에서 컨소시엄 대표사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공증된 위임장은 <양식 10>대표법인 선임서로 같은 서류로 판단되는 바, <양식 10>대표법인 선임서를 공증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법인간 권리관계 및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서와 <양식10> 대표법인 선임서를 모두 공증 받아 사업제안서 1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와 별도로, 공모참가 신청 현장접수(10월 28일) 시, 사업신청자 대표 혹은 대표의 위임장(양식없음, 법인인감날인 필요)을 받은자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자가 사업신청자 대표가 아닐 경우 「16쪽, 제12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주관사 대표로 부터로의 사업제안서 접수에 대한 위임장과 함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	12	제9조 ②	• “스튜디오의 외부공간 등을 활용하여 실외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에서 실외 스튜디오의 규모 및 시설의 구체적인 스펙사항이 있는지?	▸ 실외 스튜디오는 문화집객시설과 연관되는 창의성이 필요한 시설로서 정량적인 규모 혹은 스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상제작시설 도입 계획 우수성" 및 "문화집객시설 도입 계획 우수성" 평가항목에서 평가 대상이 될 내용으로 집객시설과의 유기적인 측면과 각 제안사의 창의적인 계획을 더하여 제안하여야 합니다.
10	13	제9조 ③	• “오피스텔에서 유발되는 학령인구와 관련하여 관할교육청과 학생배치대책 협의를 완료한 후..” 에서 인근 유발되는 학령인구 부족으로 인해 개교자체가 어려울 시에도 5-3블럭에 예정된 학교 설립은 진행되는지?	▸ 투자유치용지 5-3BL에 신설 예정인 학교는 국제업무단지 및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계획된 내용으로 본 사업에서 유발되는 학령인구와는 별개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11	14	제9조 ⑤	• “사업신청자는 현재 청라국제도시 투자5-3블럭 내 학교설립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에서 5-3블럭에 예정된 학교의 위치 및 종류와 규모는?	▸ 투자유치용지 5-3BL 부지에 협의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은 국제업무단지 및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개소(48학급), 중학교 1개소(28학급)의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준공시점(2028년 12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	16	제12조 ⑤	• “사업신청자 대표 혹은 대표의 위임장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한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에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참여자의 경우 주관사 대표자 또는 주관사 대표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 공모참가 신청 현장접수(10월 28일) 시, 사업신청자 대표 혹은 대표의 위임장(양식없음, 법인인감날인 필요)을 받은자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자가 사업신청자 대표가 아닐 경우 「16쪽, 제12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주관사 대표로부터로의 사업제안서 접수에 대한 위임장과 함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3	16	제12조 ②	• “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재무 증빙 자료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에서 3년간 재무제표는 2019~2021년 인지 여부?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는 2019~2021년의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14	24	제21조 ①	• “우선협상대상자는 주무관청 및 LH와 협의하여 상호 합의된 사업계획에 의거 개발(실시)계획 변경신청서 및 필요 제반서류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변경신청서 및 필요 제반서류 제출의 기한이 있는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과정 및 유관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15	27	제25조 ②	• “단,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시에는 그 납입 자본금이 총 사업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매 납입시 외국인직접투자의 납입 비율 30%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납입금에 대한 환율 기준이 자본금 투입 시점인지 공모제출일 기준인지?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원화기준 투자액이 명시되게 되어있으므로, 외국인 직접투자금의 원화 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준하게 됩니다.
16	33	제41조 ①	• 공모기간 내(9월 이후) 서면 질의를 추가로 진행 가능한지?	▸ 서면질의 및 답변 이후에도 질의는 가능합니다.
17	37	[첨부2] 2. 가. ⑥	• “물가상승률 : 공고일 기준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 발표 공고월(2022년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연간)을 적용하면 되는지?	▸ 공모공고일 기준(2022년 7월 28일)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연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 http://kostat.go.kr/
18	44	[첨부2] 5. ②	• “최근 5년간 영상제작, 배급, 스튜디오 운영 등 관련 사업의 경력, 규모, 주요 성과, 수주금액(완료여부)”에서 최근 5년의 기준은 본건 공모제안서 제출일 부터 5년 내 사업경력을 뜻하는지?	▸ <첨부2>의 핵심사업자 사업경력의 최근 5년간은 공모개시일(2022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9	46	[첨부2] 7.	• “원본은 인감 날인 등을 하여야 함/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에서 원본 /사본의 경우 표지에만 날인하면 되는지?	▸ 인감날인 및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은 사업제안서 각 권(별권 포함) 표지에 날인을 의미합니다.
20	46	[첨부2] 8. ①	• “사업제안서 이외에 도면 및 전산파일(USB)을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도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 1부)”에서 “각 1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 압축스치로폴(우드락) 각 1부 제출 및 저장장치(USB) 안에 각 도면을 각 1개의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1	46	[첨부2] 8. ①	• 별도 제출물 중 도면((1)종합배치도~(6)세부조감도 등)에서 도면 스케일과 CG컷 수의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별 매수 제한이 있는지?	▸ 도면 스케일의 제한은 없습니다. (1)종합배치도~(5)전체조감도는 이미지 수 1개로 제한하며, (6) 세부조감도는 이미지 수에 제한은 없으며 항목별 매수는 1매입니다.
22	46	[첨부2] 8. ②	• 별도 제출물 중 도면((1)종합배치도~(6)세부조감도 등)은 ②항에 따른 보드만 제출하면 되는지? 또는 별도의 도면 제출이 필요한지?	▸ 압축스치로폴(우드락) 각 1부 제출 및 저장장치(USB) 안에 각 도면을 각 1개의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3	46	[첨부2] 8. ②	• “세부 조감도”는 “세부 투시도”를 포함하는지?	▸ 전체조감도는 단지 전체를 상공에서 바라본 그림을 의미하며 세부 조감도는 단지내 주요시설물의 입체 그림을 조감 혹은 투시도로 표현한 그림을 의미합니다. (6) 세부조감도 표현 시 자율적으로 A1 도판에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	46	[첨부2] 8. ③	• “사업제안 발표는 자유양식(PPT 등)으로 준비하되, 발표시간은 20분 이내” 에서 사업제안 발표자료 제출 부수는 따로 없는지?	▸ 발표자료는 약25부 제출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25	46	[첨부2] 8. ③	• 사업제안 발표자료(PPT)의 제출시기(본 평가 대상자 발표 예정시기)는 언제인지?	▸ 발표자료(PPT)는 평가당일 제출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26	46	[첨부2] 8. ③	• “발표내용 및 발표자료는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에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문구 및 그림의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발표자료를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동영상등 설명을 위한 추가적인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	▸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표현 형식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27	47	[첨부2] 8. ④	• ①항의 전산파일 USB와 ④항의 전산파일 USB가 동일한 제출물인지? 다르다면 ①항의 전산파일 USB와 ④항의 전산파일 USB의 차이가 무엇인지?(첨부파일 내용 및 제출 개수 등)	▸ 동일한 제출물을 의미합니다.

28	47	[첨부2] 8. ④	• 도면의 경우 DWG, PDF 형식 등 제출하는 형식 기준이 있는지?	▸ 도면은 종합배치도 등 (1)~(6)의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PDF, hwp, jpg 중 하나로 제출하면 됩니다.
29	47	[첨부2] 8. ④	• HWP, JPG로 제출해야하는 그림파일은 무엇인지?	▸ 그림파일은「46쪽, 8.별도 제출물-①」의 도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PDF, hwp, jpg 중 하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0	14	제9조 ⑤	• “사업신청자는 현재 청라국제도시 투자5-3블럭 내 학교설립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투자5-3블록 내 학교설립 예정 시점은 언제로 계획중인지 질의 드립니다. • 설립예정 학교는 초/중/고 중 어떤 학교인지 질의 드립니다.	▸ 투자유치용지 5-3BL 부지에 협의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은 국제업무단지 및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개소(48학급), 중학교 1개소(28학급)의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준공시점(2028년 12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1	18	제15조	• 공모지침서 제16조와 제18조에 따르면 본 평가의 모든 항목이 정성평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평가의 모든 항목이 정성평가인지 혹은 정량평가 항목이 있다면 어떠한 항목인지 질의 드립니다.	▸ 모든 항목이 상대 정성평가이나 사업신청자 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사업신청자의 재무재표, 신용평가 등급 등의 정량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32	21	제17조	• 공모지침서 제17조에 따르면 “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 규모”를 평가하게 되어있으며 [첨부2] 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3.『사업신청자』작성요령 ⑥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 규모에 따르면 핵심도입시설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총 비용을 <양식24>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의 “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 규모”는 어떻게 평가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ex1. : <양식24> 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요약)의 합계금액에 따라 상대평가 - ex.2 : 핵심도입시설의 세부시설과 투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	▸ <양식 24>에 제출된 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의 합계금액으로 상대평가할 예정입니다.

33	27	제25조 ⑤	• 산업시설용지의 모든 시설은 제3자에게 분양 혹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영법인이 최소 10년 이상 책임 운영해야 하는데, 준공 이후(혹은 용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날 이후) 외국법인을 제외한 운영법인이 운영해도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ex) 법인설립 시점 ~ 준공시점 까지 : A사(외국법인), B사(건설출자자), C사(전략적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사업 추진, 준공시점 이후 : A사(외국법인), B사(건설출자자)가 제외된 C사(전략적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운영사업 추진 •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은 핵심사업자 혹은 핵심테넌트(LOC 제출)에게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운영법인이 제3자가 아닌 출자자 혹은 핵심사업자로 구성될 경우 운영제안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협상과정에서 구체화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출자자로 참여하지 않은 핵심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핵심테넌트에게는 소유권이전이 불가합니다.
34	37	[첨부2]	•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적인 사항 ⑥에 따라 공고일 기준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는 ‘22.06月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인 108.22를 활용하여 월별 상승률 0.61%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22.05月 107.56 ⇒ ‘22.06月 108.22 (5월 대비 0.61% 상승)]	▸ 공모공고일 기준(2022년 7월 28일)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연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 http://kostat.go.kr/
35	40	[첨부2]	• 신용등급 평가 관련, 양식 16에 컨소시엄사의 신용등급 환산점수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환산된 점수표와 관계없이 정성평가(탁월/우수/보통/미흡/부진)로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국내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음“에서 공증을 수행하는 국내기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제안서 평가 시, 사업신청자가 작성한 <양식16> 신용등급 환산점수표를 참고하여 상대평가 예정입니다. ▸ 국내기관이란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업무를 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문서 확인절차)을 받고 국내기관의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6	43	[첨부2]	• “4.『종합개발구상』작성 요령의 ⑥ 지역사회 기여 및 ESG 경영 계획 (5) 전체 고용인원 대비 지역주민 고용 계획을 <양식 25> 지역주민 고용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구체적인 고용계획 이행방안 제시“에서 고용기간은 개발기간인지 준공후 운영기간인지 질의 드립니다	▸ <양식25>는 개발기간과 운영기간 동안 지역주민 고용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45	[첨부2]	• ② 사업제안서는 A4용지(백상지)를 양면인쇄, 장변으로 무선좌철 제본하여 총 15부 제출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의 사업제안서 15부는 7.사업제안서 서류 제출의 1권, 2권 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38	46	[첨부2]	• ※ 원본은 인감 날인 등을 하여야 함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원본, 사본 각각 표지에만 날인하면 되는것인지, 각각 모든페이지에 날이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인감날인 및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은 사업제안서 각 권(별권 포함) 표지에 날인을 의미합니다.
39		[첨부2]	• 도면의 종류 (1)종합배치도...(6)세부조감도 각 도면내용의 배치는 잘유롭게 하는것인지와 전체 및 세부조감도 이미지 사용 개수의 제한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전체조감도는 단지 전체를 상공에서 바라본 그림을 의미하며 세부 조감도는 단지내 주요시설물의 입체 그림을 조감 혹은 투시도로 표현한 그림을 의미합니다. (1) 종합배치도~(5) 전체조감도는 이미지 수 1개로 제한하며, (6) 세부조감도는 이미지 수에 제한은 없으며 항목별 매수는 1매입니다.
40		[첨부2]	• (2) 발표내용 및 발표자료는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발표자료 작성시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편집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41	14		• 투자 5-3블럭 내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학교가 초등, 중등, 고등학교 중 어느 것인지 질의합니다.	▸ 투자유치용지 5-3BL 부지에 협의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은 국제업무단지 및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개소(48학급), 중학교 1개소(28학급)의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준공시점(2028년 12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42	18		• 사업신청자 자격 서류검토와 관련하여 사업제안서 평가보다 선행인지 동시진행인지와 서류검토 부적합 시 사업제안서 평가에는 참여가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서류검토가 사업제안서 평가보다 선행된다면 현재 사업신청자와 관련 “기본사항”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1권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고 그 외 사업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 사업신청자 자격 서류 검토는 본 평가 전에 선행되며 부적합한 사업신청자는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신청자 자격 서류 검토를 위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서를 열람합니다.
43	21		• 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평가 기준과 배점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모든 항목이 상대 정성평가이나 사업신청자 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사업신청자의 재무재표, 신용평가 등급 등의 정량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44	26		• 제23조 사업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⑤항 10. 개발이익 재투자, 초과이익 환수 등에 관한 사항” 항목과 관련하여, 지원시설 개발이익의 핵심도입시설 조성을 위한 투입 외 추가적인 개발이익 재투자나, 초과이익 환수가 필수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핵심도입시설 조성을 위한 투입금 외의 개발이익 재투자나 초과이익 환수가 논의 될 수 있습니다.
45	26		• “제24조 사업협약 후속 사항 및 사업자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시점이 개발(실시)계획 완료 및 사업협약 이후로서 최초 사업제안서 대비하여 총사업비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사업제안서가 아닌 사업협약 시점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 사업협약 후속 사항은 협상과정, 개발·실시계획 변경, 유관기관 협의 과정 등에서 변경된 최종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46	29		•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설립년도, 자본금 등의 별도 제한이 있는지, 또한 FI나 핵심사업자가 외국인투자자로 참여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년도, 자본금 등의 자격 제한은 없으나 사업신청자 평가분야에서 평가대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사가 재무적투자자 혹은 핵심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7	9	제7조 ②	• 컨소시엄의 경우 '<양식 10> 대표법인 선임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지?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법인간 권리관계 및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서와 <양식10> 대표법인 선임서를 모두 공증 받아 사업제안서 1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와 별도로, 공모참가 신청 현장접수(10월 28일) 시, 사업신청자 대표 혹은 대표의 위임장(양식없음, 법인인감날인 필요)을 받은자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자가 사업신청자 대표가 아닐 경우 「16쪽, 제12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주관사 대표로 부터로의 사업제안서 접수에 대한 위임장과 함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8	49	양식1	• 1권, 2권, 3권, 별권 모두 <양식 1>의 표지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 네, 그렇습니다.
49	50, 52	양식2, 4	• 첨부서류별 법인인감증명서가 중복되는 바, 양식별로 법인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는지?	▸ 법인인감증명서는 각 법인별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50	51	양식3	•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지?	▸ <양식3>을 작성하고,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51	57	양식 9	• 자본금, 매출액, 총자산 등 이 외에도 재무제표의 항목이 기입되는 사항에 대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지?	▸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2	20~22	제16조 제17조	• 현재 지침서상 평가내용과 작성 세부지침에 주어진 목차의 항목이 통일되어있지 않음. 예시로 재원조달계획이 사업신청자 항목에 포함	▸ 1권은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의 부속서류가 다량일 것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재원조달계획은 '사업계획'에 해당하고 매수 산정이 반영되어야 하여 2권에 포함

			되는지, 사업계획서 항목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상이함.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과 사업계획서가 각각 제1권, 제2권으로 나뉘어야 하는 바, 어떠한 기준을 따라 작성하고 구분하면 되는지?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60	양식12	• 제2조제1항제19호에서 정의하는 '핵심테넌트'도 '<양식 12> 영상·문화 복합단지 운영확약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또는 LOC만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 핵심테넌트는 운영확약서가 아닌 LOC 제출 대상입니다.
54			• 핵심사업자 제출 서류(출자하지 않는 경우) ① 제6조제4항의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양식 12> 영상·문화 복합단지 운영 확약서 ③ <양식 4> 인감신고서 ④ 법인인감증명서 ⑤ <양식 20> 유사사업 수행경험 소개서 및 증빙서류 이 외에도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가 있는지?	▸ 핵심사업자가 출자여부와 관계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9	제6조 ④	• 3년간 '10편 (드라마 기준)'이 연속극 열 개 시즌을 지칭하는지, 한 시즌에 속한 10편을 지칭하는지 질의합니다.	▸ 공모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2019년 7월 29일 ~ 2022년 7월 28일) 최초 방영한 작품의 수(제작 편수는 드라마 연속물 전체를 1편으로 계산)가 10편 이상이어야 합니다.
56	9	제7조	•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공증된 위임장을 받아야하는데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양식10>의 대표법인 선임서의 연서날인으로 갈음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법인간 권리관계 및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서와 <양식10> 대표법인 선임서를 모두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57	12, 37, 41	제9조 ②, [첨부2]	• 모든 시설은 제 3자에게 분양 혹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운영법인이 최소 10년이상 책	▸ 사업성분석기간은 최초 투자 시점부터 최소 30년간을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3.,	임운영하여야 하나 사업성 분석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되어있고 추정재무재표도 30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영기간에 한정하여 사업성분석을 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58	14	제9조 ⑤	• 투자5-3블럭 내 학교설립 예정사항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예정 위치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혹은 구체적인 학교설립계획의 확인이 가능 한지 질의드립니다.	▸ 투자유치용지 5-3BL 부지에 협의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은 국제업무단지 및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개소(48학급), 중학교 1개소(28학급)의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준공시점(2028년 12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59	19~23, 36~39	제16조, [첨부2]	• 19p~23p에 기술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 내용)의 순서/내용이 36p~39p의[첨부2]나. 사업제안서의 구성의 순서/내용과 상당부분 상이합니다. 이에 39p ②항에 따라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심사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바, 사업지침서의 구성을 평가기준과 일치시켜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1권은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의 부속서류가 다량일 것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재원조달계획은 '사업계획'에 해당하고 매수 산정이 반영되어야 하여 2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0	20, 40	제16조, [첨부2] 3. ②	• 제16조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재무건전성 항목은 70점의 비계량 평가항목입니다. 첨부2 3.사업신청자 작성요령, 2 재무건전성 항목의 신용등급 배점은 계량 40점으로 제시하는 바,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을 별개로 평가할 경우 제16조의 평가기준의 차등배점 평가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정바랍니다.	▸ "재무건전성" 평가항목은 비계량 상대 평가항목으로 신용등급 환산점수표는 정량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될 참고 자료로써 환산점수표를 참고하여 상대평가 예정입니다.
61	33	제39조	• 사업신청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제안서와 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서류는

			발(실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의 사업제안서를 제안하는 사업신청자도 해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62	36	[첨부2] 1. ⑩	• 사업제안서의 분량이 250p로 적지 않고 참고사진, 그림 등 사업이나 공간의 설명을 위한 예시 사진, 그림이 다수 삽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이미지의 출처를 모두 명기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출처를 명기하고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는 등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 없이 작성하여야합니다.
63	40	[첨부2] 3. ②	• 재무건전성의 평가 기준은 대표사 기준인지, 컨소시엄 지분율을 고려한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컨소시엄 출자자 지분을 고려하여 출자자 모두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64	40	[첨부2] 3. ②	•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중 한 항목에 대한 평가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리며, 가장 높은 신용등급 혹은 가장 낮은 신용등급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지, 혹은 가장 최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지 등 신용등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사업신청자가 선정한 한 항목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65	46	[첨부2] 8. ③	• 발표를 위한 자료는 1) 3권 사업제안서요약 등 기존 자료가 아닌 별도의 발표 자료를 매수제한 없이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는지 2)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3) 사업제안서의 이미지 등을 일체의 편집 없이	▸ 발표자료는 약25부 제출로 예정으며,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표현 형식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수록하는지 4)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출한다면 파일로만 제출하면 되는지, 별도의 부수가 정해져 있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66	8	제6조 ④	•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중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방송사업자>가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핵심사업자 요건에서 왜 제외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하생략>	▸ 본 지침 제6조 제4항의 핵심사업자는 7,000평 이상으로 조성될 실내 스튜디오 등 영상콘텐츠 제작시설을 실제 사용하게 될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공모지침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IPTV의 경우, 본 지침에 따라 핵심사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핵심테넌트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7	8	제6조 ④	• 핵심사업자 요건 중 제4번에 하나의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모회사와 자회사(계열회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핵심사업자 기준에 충족하면 모회사가 대표로 포함하여 합산실적을 제출하여도 되는지?	▸ 핵심사업자는 각 법인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68	8	제6조 ①	• 본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 LH와 상호 협의를 통해 인허가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확정됩니다. 귀청에서 예상하는 실시계획인가(변경)승인 기한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1~2년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69	33	제38조	• 주무관청, LH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자가 출자자 및 핵심사업자의 변경, 지위, 협상, 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공모지침 제38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자의 지위는 양도 및 이전할 수 없습니다.
70	52	양식4	• <양식4> 인감신고서의 붙임 관련 공동대표인 경우, 이 중 한 명의 대표자 명의로 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공모지침에 따라 개별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공동)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대표법인 선임서)하고 대표자 1인만 날인하시면 됩니다.

71			• 사업부지 관련 최종개발계획 도면자료를 CAD파일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 답변과 함께 제공 가능한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72		기타	• 추가 질의사항 발생시 질의기간 이후에도 질의가 가능한지?	▸ 서면질의 및 답변 이후에도 질의는 가능합니다.
73		기타	• 사이트 일대 맹꽁이 서식지 발견 관련하여 개발 진행 시 환경단체 반발 등이 예상되는바, IFEZ나 인천시 측에서 해당 이슈 관련해서 '법정보호종 포획 및 이주 용역 발주' 등의 해결책이 있는지?	▸ LH는 청라국제도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통해 법정보호종 조사(반기별 1회)를 시행 중이며, 직전 조사결과('22년도 상반기) 본 사업 대상지에 맹꽁이 서식은 발견되지 않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서식이 확인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포획, 이주 등)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74	1	제2조 ①	• 컨소시엄 구성원 수의 제한은 없는지?	▸ 제6조 참가신청 자격 및 조건 외에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단, "출자자 구성" 평가항목에서 평가대상이 되므로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75	1	제2조 ①	• 출자자(2조 1항 25호) 아닌 자가 "사업신청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 출자자가 아닌 자는 사업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76	2	제2조 ①	• 문화집객시설 중 문화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문화시설과 같은 의미인지?	▸ 문화집객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공모지침서 6페이지 제4조 제1항 제4호 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의 변경안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여야 합니다.
77	3	제2조 ①	• 핵심사업자와 핵심테넌트가 중복되어도 되는지?	▸ 핵심테넌트는 핵심도입시설을 장기간 사용하게될 입주사 혹은 조성에 특정 기술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이고 핵심사업자는 해당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될 자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사업자는 핵심도입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당연히 시설도 사용할 것임으로 이미 핵심테넌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중복적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78	3	제2조 ①	• '핵심테넌트'는 핵심도입시설의 단순 사용이 아닌 장기간 사업에 참여 및 실제 사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장기간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있는지?	▸ 정량적 기준은 없으나 제출되는 확약서에 제시된 기간 등이 “관리·운영 계획” 등 평가요소에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9	3	제2조 ①	• 정의 조항 중 "~ 구성될 컨소시엄에 투자를 확약한 각각의 법인"은 그 문맥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할 것을 확약한 각각의 법인"을 뜻하는지?	▸ 네, 맞습니다.
80	6	제4조 ①	• "산업시설용지(70% 이상)"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를 뜻하는 것인지(공모지침서상 산업시설용지로 표시된 면적에 대해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는지)?	▸ 본 공모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을 근거하여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유관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산입법을 고려한 검토가 있을 수 있음으로 해당용지에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시설로 제안하셔야 합니다. ※ 산입법상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1	7	제5조 ③	• 사업신청자는 지원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얻은 개발이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핵심 도입시설 조성에 투입하여야 하며 그 규모와 방법 등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i) 일정금액 이상은 얼마를 말하는 것이며, (ii) 규모와 방법은 평가의 대상이라면, 전체 배점 및 배점 간 차등 폭은 어떻게 되는지?	▸ 일정금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금액으로 "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 규모" 평가항목에서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배점이 적용되며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82	8	제6조 ③	• "사업신청자의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5% 이상~"은 그 문맥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5% 이상~"을 뜻하는지?	▸ 사업신청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여야 함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5% 이상되어야 하며, 그 자본금중 30%이상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83	8	제6조 ④	• 핵심사업자가 운영확약을 하되,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는 안 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84	8, 12	제6조 ④, 제9조 ②	• 핵심사업자가 운영확약을 제출하도록 되어있고(6조 4항),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법인이 10년간 책임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9조 2항 2호), 핵심사업자 단독으로 또는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법인 중 어느 하나가 10년 간 소유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법인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출자자 및 핵심사업자 중 일부 또는 전체)된 운영법인이 10년간 소유 및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85	9, 60	제6조 ④, 양식12	• 핵심사업자의 '운영 확약서 양식'을 보면 운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각 핵심사업자별 운영확약할 시설의 범위, 운영확약기간 등 조건은 사업제안서에 따라 자율 제안이 가능한지?	▸ 핵심사업자의 세부 운영조건은 사업신청자 자율 제출사항입니다.
86	12	제9조 ②	• 준공시점에 사업자의 출자자 및 핵심사업자로 구성된 신설법인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핵심도입시설을 소유한 운영법인의 100% 주주로 참여하여 10년 운영해도 무방한지?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운영법인이 제3자가 아닌 출자자 혹은 핵심사업자로 구성될 경우 운영제안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 협상과정에서 구체화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87	11, 12	제9조 ①, ②	• 9조 2항 2호에 따른 '운영법인'의 10년 이상 핵심도입시설 책임운영 의무와, 제9조 1항 6호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핵심도입시설의 '직접' 운영방안 수립의 두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데, 사업신청자는 자율적으로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 출자자와 핵심참여자가 구성한 운영법인도 사업신청자의 책임운영에 해당하므로,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다. 운영방안은 자율적으로 수립가능하나 사업제안에서 평가대상이 될 내용입니다.

88	12	제9조 ②	• 운영법인의 책임운영 10년 의무조항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각 시설별 준공시점이 다른 경우 핵심도입시설 중 일부가 최초로 준공완료된 시점으로 기산하면 되는지)?	▸ 핵심도입시설이 준공완료 된 후 영업개시일로 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시설을 순차적으로 준공 및 영업개시한 경우, 전체시설의 준공을 완료하고 영업개시한 시점을 기산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89	12	제9조 ②	• 산업시설용지 내 모든 시설은 10년 동안 제3자에게 분양 혹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데, 기존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 구성된 신설법인 또는 신규법인으로의 이전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는지?	▸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법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이가 충족될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90	12	제9조 ②	•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시설용지(준공업지역) 내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기존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법인에게 양도(소유권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법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이가 충족될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91	12	제9조 ②	• 산업시설용지의 모든 시설은 제3자에게 분양 및 소유권이전이 안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법인(PFV)이 출자자, 핵심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법인에 분양 및 소유권 이전은 가능한지? •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는 언제까지 운영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법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이가 충족될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 운영법인의 지분은 핵심도입시설의 영업개시일로 부터 10년 후까지 보유하여야합니다.
92	14	제9조 ④	• 관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1~2년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93	14	제9조 ⑤	• 청라국제도시 투자5-3블럭 내 설립 예정인 학교시설의 예정부지면적, 연면적, 학생 수, 건축계획 등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투자유치용지 5-3BL 부지에 협의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은 국제업무단지 및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개소(48학급), 중학교 1개소(28학급)의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준공시점(2028년 12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94	16	제12조 ②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는 공모 공고일 기준 작성되어 있는 최근 3개년치로 제출하면 되는지(6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는 작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는 2019~2021년의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95	25	제23조 ②	•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되면 사업자가 가지는 "사업협약상 당사자 지위"는 외국투자기업에 이전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사업자 지위를 가지게 되며, 출자자는 그와 동시에 공동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아니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협약을 이행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는 사업협약서상의 의무를 계속하여 수행해야 하는지?	▸ 운영계획에 별도의 운영법인 설립되는 경우 사업자가 가지게 되는 의무 및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사업협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내용이 사업협약서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96	27	제25조 ②	•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필수사업비 지출을 위해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미리 사업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총 사업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 사업협약 체결 이전에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미리 설립한 사업법인이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하여 요건을 충족해도 되는지?	▸ 본 지침 제25조 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단, 이는 필수 조건이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후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의 일부자금 선 예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및 일부 자본금 납입시기는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97	27	제25조 ⑤	• 용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 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도입시설의 사용승인일(준공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후의 납입자본금 및 출자비율 변경은 주무관청 및 LH의 사	▸ 용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 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도입시설의 사용승인일(준공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후의 납입자본금 및 출자비율 유지 등 관련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제안 내용을 바

			전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단,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법인이 10년 책임운영하는 경우 전제)? • 불가하다면 사전 승인 없이 출자자 또는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탕으로 사업협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내용이 사업협약서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98	27	제25조 ⑥	• '우선협상대상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명기된 컨소시엄 협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컨소시엄 협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시기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인 것인지?	▸ 제25조 제6항의 컨소시엄 협약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를 의미합니다.
99	27	제25조 ⑥	• 글로벌 테넌트 유치에 노력하여야 하며…에서 글로벌 테넌트라 함은 어떤 사업 범주의 테넌트를 의미하는 것인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사의 기여 문제를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100	40	[첨부2] 3. ②	• 재무건전성 배점 70점은 상대평가인데, 이 중 양식16에 의한 신용등급 환산점수표는 40점으로 명기되어 있는바, '출자자의 신용등급 우수성'은 40점 절대평가이고, 나머지(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30점은 상대평가로 한다는 뜻인지?	▸ 재무건전성 항목은 비계량 상대 평가항목으로 신용등급 환산점수표는 정량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될 참고 자료로써 환산점수표를 참고하여 상대평가 예정입니다.
101	44	[첨부2] 5. ②	• 사업수행실적 증빙 시 <양식 20>에 작성하고, 증빙을 위한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부속서류가 어떤 것인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해당 증빙서류는 핵심사업자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적의 판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2	45	[첨부2] 6.	• 사업제안서 각 권별 제목 표기방법, 보고서 제본부위(측면), 표지 제목 인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 규격 세부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양식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지침은 없습니다.

103	46	[첨부2] 7.	• 사본의 경우 표지에만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면 되는지(사본의 표지만인지, 부속/증빙서류 일체에 날인해야 하는지)?	▸ 인감날인 및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은 사업제안서 각 권(별권 포함) 표지에 날인을 의미합니다.
104	46	[첨부2] 7.	• 별권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속 및 증빙서류'의 '형식 및 분량'은 '부속서류 외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데, '부속서류 외'의 의미가, '첨부3. 사업제안서 활용 양식 목록상 양식 1 ~ 26을 제외한'의 의미로, 양식에 포함되지 않는 증빙서류만 별권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라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다면, 첨부 3. 양식을 모두 포함한 증빙서류를 별권으로 제작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 주무관청이 양식을 제시한 서류들은 본권(1권과 2권)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권에는 페이지 산정을 원하시지 않는 증빙자료 위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46	[첨부2] 8.	• 사업제안 발표자료의 경우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동일하되 표현과 관련한 형식 등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지?	▸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표현 형식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106	46	[첨부2] 8. ②, ③	• (2항 관련) 도면 제출 시 우드락 대신 폼보드 사용할 수 있는지(우드락은 도면 부착 시 휘어지는 단점이 있음)? • (3항 1호 관련) 사업제안 발표자료는 인쇄물 제출이 필요 없는지? 매수 제한이 없는지? 발표자료 내 동영상, 음성, 에니메이션 효과 등 사용 가능한지? 발표시간 제한 이외에 표현 양식, 순서, 분량 등 다른 제한이 없는지? • (3항 3호 관련) 발표자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사는 출자사에 한정되는지, 설계용역사도 발표자가 될 수 있는지? • (3항 3호 관련)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4대보험가입증명원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 공모지침에 따라 압축스치로폴(우드락)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는 약25부 제출 예정이며,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표현 형식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발표자는 사업신청자 구성원(출자자 및 핵심사업자)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합니다. ▸ 발표 당사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07	61	양식13	• 주4)에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법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국내 회계법인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을 제출함"으로 되어 있는바, 시간관계상 위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해당 서류는 사업신청서 접수 이후에(후행) 제출할 수 있는지?	▸ 공모 참가신청서 접수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64	양식16	• 외국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을 시, 사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 <양식 16>의 신용등급 환산점수표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신용평가 기관이 다수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어려울 경우, 40쪽 ②재무건전성의 지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배점을 '0점'으로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70	양식20	• 유사사업 수행경험 소개서 작성시 자회사 또는 관계사의 실적도 포함시켜도 되는지?	▸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핵심사업자 해당법인의 경력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0	12	제9조 ②	• 별도 설립하는 운영법인의 개수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지? • 별도 설립한 운영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되는지? • 산업시설용지 및 시설 소유권을 운영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출자자 구성 및 지분비율은 신청자가 계획서에 자유롭게 제안하는 것인지?	▸ 운영법인의 수는 컨소시엄의 계획에 맞추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지침에서 핵심도입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핵심사업자를 2개사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이 다수일 경우, 그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법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이가 충족될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 운영법인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비율은 제3자가 아닌 자들로 구성된다는 조건하에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평가의 대상이 될 내용입니다.

111	12	제9조 ②	• <양식 24> 의 세부시설명의 예상투입비의 구성 항목이 <양식 17>처럼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용 등인지? 아니면 순수 시설투자비만 계상해야 하는지?	▸ 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는 직접공사비(단지 내 기반시설 공사비를 포함)와 간접공사비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양식24>의 예상투입비는 핵심도입시설 조성 투입비를 간략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양식17>의 총사업비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12	37	[첨부2] 2. 가.	• 산업시설용지의 핵심도입시설을 포함한 시설은 최소 10년 이상 책임운영이나, 사업성 분석기간은 최초 투자 시점부터 최소 30년간으로 되어 있고, 추정 재무제표 또한 30년간 작성토록 되어 있음. 핵심도입시설 등을 준공하는 시점에 운영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10년 운영 후 매각을 가정하는 경우 사업법인이 청산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기간은 30년이 아닌 청산시점까지인지?	▸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성분석기간은 최초 투자 시점부터 최소 30년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46	[첨부2] 8. ③	• 사업제안 발표자료의 페이지 제한은 없는지? • 사업제안서 서류제출시 사업제안 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 발표내용 및 발표자료는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사업제안서의 문구, 이미지 등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은 다르지만 전달하는 내용만 동일하면 된다는 것인지?	▸ 발표자료는 약25부 제출 예정이며,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표현 형식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114	26	제23조 ⑤	•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제안시 평가내용에 없는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기해야 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사업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중 다루어질 내용으로 최종 사업계획 완료후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 별도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안단계

			는지? 명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사업협약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 별도 협상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내부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여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에서 사업자가 초과이익환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명기한다면 지역사회 기여 및 ESG 경영 계획에 공공기여 계획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5	40	[첨부2] 3. ②	• 외국법인의 경우 자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국내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법인의 신용평가기관은 제한이 없는지?	▸ 외국법인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문서 확인절차)을 받고 국내기관의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6	18	제19조 ③	• 사업제안서 발표시 동영상 삽입 및 재생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표현 형식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117	46		• 사업제안서 발표자료(PPT)는 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하는지 따로 제출 일자를 정해 주는지?	▸ 발표자료(PPT)는 평가당일 제출 예정으로,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118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최종 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최종 고시 자료 및 CAD 도면)	▸ 답변과 함께 제공 가능한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119	6, 8	제4조 ①, 제6조 ①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인허가 일정은 민간이 제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위한 기준 기간이 있는지요?	▸ 인허가 일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주무관청, LH,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상을 통해 구체화 예정입니다.
120	12, 49	제9조 ②, 양식1	• 제9조2항1호에서 사업신청자가 사업명을 제안하	▸ 사업명은 「38쪽, 사업계획서 목차」 안내에 따라 2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록 하였으나 표지 양식에는 별도로 사업명을 작성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사업명은 표지 외 사업제안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121	44, 70	[첨부2] 5. ②, 양식20	• 핵심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은 경우 양식 내 출자자명이 아닌 핵심사업자명으로 바꿔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 유사사업 수행 경험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 네, 핵심사업자명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증빙서류는 핵심사업자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적의 판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2	46	[첨부2] 7.	• 3권 사업제안서 요약은 1권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과 2권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재정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p46. 사업제안 발표 지침과 동일하게 하면되는지?	▸ 3권은 1권과 2권의 내용을 기준으로 주요내용을 사업신청자가 판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46	[첨부2] 8.③	• 사업제안발표(PPT)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과 제출부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있는지?	▸ 발표자료(PPT)는 평가당일 제출 예정으로,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124	19, 37~42	제15조, [첨부2] 2., 3.	• 37페이지 나. 사업제안서의 구성 아래 목차와 40~45페이지. 사이의 3.사업신청자 작성요령, 4. 종합개발구상 작성요령, 5.전문성관리및운영계획 작성요령 의 구성이 일치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바, 37페이지의 나. 사업제안서 구성 아래의 목차 대로 하고,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성 요령을 수정하여 조정해 주시는지?	▸ 1권은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의 부속서류가 다량일 것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재원조달계획은 '사업계획'에 해당하고 매수 산정이 반영되어야 하여 2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모지침서 37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침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는 원칙으로 하며 추가 사항이나 구체적인 부연 내용은 사업제안자가 적의 판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25	49	양식1	• <양식 1 표지 서식> 사업제안서 1권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 2권, 사업계획서, 3권 사업제안서 요약, 별권 부속 및 증빙서류를 따로 구분할 수 있게 표지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변경 사용 가능한지요? (표지 변경 사항(푸른색)) 『청라 영상ㆍ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 **사업제안서(제1권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 2022년 월 일 회사(법인)명 대표자 (인) 담당자 (전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변경 예시와 같이 양식을 준용하여 사업제안서 권별 명칭을 추가 표기 가능합니다.
126	50, 52	양식2, 4	• <양식 2> 공모 참가신청서와 <양식 4> 인감신고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중복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1부만 첨부하여도 되는지.	▸ 중복되는 서류는 각 법인별 1부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127	61	양식13	• 감사보고서도 별권 부속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수의 출자자가 참여하게 될 경우, 각사별로 3개년씩 제출해야 해서 감사보고서에만 그 양이 방대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각사별 3년 감사보고서를 원본 1부, 사본 1부를 별권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 별권은 원본 1부와 사본 5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57	양식9	• 양식9. 법인 일반현황은 핵심참여자도 작성하는지?	▸ 핵심사업자가 출자여부와 관계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3	제2조 ①	• 제2조(용어의 정의) 제①항 제19호에서 정의하는 '핵심테넌트'와 '핵심사업자'의 구분은?	▸ 핵심테넌트는 핵심도입시설을 장기간 사용하게 될 입주사 혹은 조성에 특정 기술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이고, 핵심사업자는 해당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될 자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30	9	제7조 ②	• 사업신청 때 출자자 날인을 받은 <양식10> 대표법인 선임서에 공증 받아 제출하면 되는지.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법인간 권리관계 및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서와 <양식10> 대표법인 선임서를 모두 공증 받아 사업제안서 1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와 별도로, 공모참가 신청 현장접수(10월 28일) 시, 사업신청자 대표 혹은 대표의 위임장(양식없음, 법인인감날인 필요)을 받은자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자가 사업신청자 대표가 아닐 경우 「16쪽, 제12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주관사 대표로 부터로의 사업제안서 접수에 대한 위임장과 함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31	12	제9조 ②	• 본 조항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 내 도입하는 시설은 제3자에게 분양 혹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도입시설을 제외한 일부 배후시설(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또한 10년 책임운영 필수 조항을 적용받게 되어 운영사업자의 시설운영 부담이 크고, 시설의 성격과 배치되어 오히려 귀 청의 산업시설용지의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됩니다. 이에 제9조 ② 3.에 따른 실내스튜디오 최소면적(7,000평)에 대해서만 본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산업시설용	▸ 산업시설용지에는 실내스튜디오(7,000평 이상) 외에도 실외스튜디오, 문화집객시설 등 핵심도입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배후시설의 본 지침 정의에 따라 "핵심도입시설의 운영과 연계되는 시설"로써 영상제작시설 및 문화집객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리운영 계획이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지에 계획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해주실 수 있는지.	
132	18, 46	제14조, [첨부2] 8. ③	• '본 평가'는 '사전 검토'에서 사업신청자 자격 검토절차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신청자격이 있는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 사업신청자 자격 서류 검토는 본 평가 전에 선행되며 부적합한 사업신청자는 본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3	14		• 투자 5-3블럭 내 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바, 학교 부지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드립니다.	▸ 투자유치용지 5-3BL 부지에 협의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은 국제업무단지 및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개소(48학급), 중학교 1개소(28학급)의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준공시점(2028년 12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4	46		• 발표내용 및 발표자료는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표현방식(ex. 확대, 축소, PPT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변화는 허용되는 것 인지 여부	▸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표현 형식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135	22	제17조 ③	• 제17조 평가 내용, ③항 전문성 및 관리 운영계획의 핵심사업자 참여도 항목에서, '출자여부 및 출자 규모'의 대상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항하는지, 아니면 운영법인에 해당하는지?	▸ 핵심사업자의 출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운영법인'에 모두 가능하므로 사업신청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두 항목 모두 평가대상이 됩니다.
136	12, 37		• 운영법인이 최소 10년 이상 책임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성 분석기간은 최초 투자 시점부터 최소 30년간으로 제시되어 10년만 운영한다면 사업성 분석기간을 단축해서 제시할수 있는지?	▸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성분석기간은 최초 투자 시점부터 최소 30년간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7	8		• 운영법인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 최대2개사로 제한하고 있고 운영법인의 설립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법인 1개 법인만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관리시설에 따른 운영법인 세분화를 할 수 있는지?	▸ 운영법인의 수는 컨소시엄의 계획에 맞추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본 지침에서 핵심도입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핵심사업자를 2개사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이 복수일 경우, 그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방송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세분에 따른 운영법인을 세분화 하여 운영법인 2~3개의 개별 설립도 가능한지? ex. 1. 전체 산업시설용지 운영법인 1개사 설립 2. 방송시설, 문화시설, 배후시설 등 시설운영에 용이하게 2~3개의 복수의 운영법인 설립	
138	6		• 이 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를 하여야 하는지? 산업시설용지가 공공기여라고 보아도 되는건지?	▸ 산업시설용지 조성은 동일한 사업조건으로 그 외의 추가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9	6		• 지원시설용지내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IFEZ가 예상하는 세대수 기준이 있는지? • 지원시설용지 주요 도입시설 중 오피스텔 관련 질의 - 오피스텔 규모 자율제안이 가능한지 ex. 호실수, 호별면적, 시설내 용도비율 등	▸ 세대수 및 세대규모 등 제한사항은 없으며, 사업신청자의 자율 제안사항입니다.
140	9		• “최근 3년간 10편(드라마 기준) 이상의 작품”의 정의 - 제작영상의 상영시간, 제작일 또는 상영일 기준	▸ 공모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2019년 7월 29일 ~ 2022년 7월 28일) 최초 방영한 작품의 수(제작 편수는 드라마 연속물 전체를 1편으로 계산)가 10편 이상이어야 합니다.
141	14		• 투자 5-3 블록내 학교 설립 예정지 위치 확인 -학교 건립 예정지 및 학교설립 계획안	▸ 투자유치용지 5-3BL 부지에 협의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은 국제업무단지 및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개소(48학급), 중학교 1개소(28학급)의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준공시점(2028년 12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2	36		• 핵심사업자와 핵심테넌트 관련 질의 - 동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가 다수의 제안서에 핵심사업자와 핵심테넌트로 교차 참여가	▸ 「36쪽, 첨부2, 1.일반사항」 "핵심사업자, 외국인직접투자 법인, 핵심테넌트 등은 복수의 사업신청자에게 운영, 투자, 참여 등에 대하여 확약할 수 없다. "에 따라 교차

			가능한지 ex. 동일한 업체가 A사업제안서에는 핵심사업자로 참여하고, B사업제안서에는 핵심테넌트 또는 핵심도입시설로 교차 참여가 가능한지? (핵심테넌트는 LOC 제출하나, 핵심도입시설은 별도 제약 없음)	참여 불가합니다.
143	45		• 사업계획서는 한글(2010버전이하) 사용 작성 관련 질의 - 사업계획서 내용 중 주텍스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미지화 하여 한글파일에 삽입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④항의 글자모양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 글자모양 기준은 적용하셔야 합니다.
144	8	제6조 ④	• OTT 및 영화제작사의 경우, 글로벌회사의 한국지사 운영확약서도 유효하다면 확약서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지사 확약서도 유효한지 질의 드립니다.	▸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는 핵심사업자의 경우, 본사의 운영확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145	11	제9조 ②	• 산업시설용지(준공업지역) 이외 지원시설용지(준주거지역) 부분은 분양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용지의 매각은 불허하나 시설매각(시설물의 분양 등)은 허용합니다.
146	46	제11조 ⑥, [첨부2] 7.	• 사업제안서 사본의 경우 표지에 인감날인은 아래 표기방법 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그리고 지침서 46p의 주석을 보면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라고 되어있는 바, 사본의 경우 사업제안서 표지에만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예시	▸ 인감날인 및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은 사업제안서 각 권(별권 포함) 표지에 날인을 의미합니다. 예시 2번과 같이 사본에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table><tr><th>사본 날인 방법 1</th><th>사본 날인 방법 2</th></tr><tr><td>표지 (인) 날인X</td><td>원본표지 흑백복사본</td></tr><tr><td>원본대조필 날인O</td><td>원본대조필 날인O</td></tr><tr><td>ex. 예시 2022년 월 일 원 본 대 조 필 (인) 회사(법인)명 (주)활빈당 대 표 자 홍 길 동 (인) 담 당 자 허 균 (전화 00-000-0000)</td><td>ex. 예시 2022년 월 일 원 본 대 조 필 (인) 회사(법인)명 (주)활빈당 대 표 자 홍 길 동 (인) 담 당 자 허 균 (전화 00-000-0000)</td></tr></table>	
147	20, 37~45	제16조 [첨부2]	• 20p의 평가항목과 37~39p에 나와있는 목차, 40~45p에 나와있는 작성 요령의 순서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 심위의원들이 평가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제16조의 평가항목 순서에 맞게 목차를 수정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1권은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의 부속서류가 다량일 것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재원조달계획은 '사업계획'에 해당하고 매수 산정이 반영되어야 하여 2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모지침서 37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침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는 원칙으로 하며 추가 사항이나 구체적인 부연 내용은 사업제안자가 적의 판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8	20~22, 39	제16조, 제17조 [첨부2] 2.	• 4.5.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내용은 평가항목과 평가내용 상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투자 계획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은 평가항목 "공공기여계획"에서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9	37	[첨부2] 2. 가. ⑥	• 물가상승률 적용 시 공고일이 속하는 월 직전 1년(12개월)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공모공고일 기준(2022년 7월 28일)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연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 http://kostat.go.kr/
150	37	[[첨부2] 2. 가. ⑧	• 사업성을 위해 분양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예상되며 건설기간 5년 이후 2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영 10년 이후(제9조에 따르면 최소	▸ 가능합니다. 단, 운영계획의 평가 대상이 될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운영) 적정한 시점 분양 등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151	45	[첨부2] 6. ③	• 보고서 구성 중 A4(또는 A3) 뒷면 내용이 없는 공페이지가 될 경우 페이지 산정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포함되지 않습니다.
152	46	[첨부2] 7.	• 1~3권 작성시 폰트(크기, 종류)와 줄간격 이외에 제안서의 양식 등 기준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한글 상하좌우 여백 등) • 또한 분량의 제한이 없는 1권(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과 별권(부속 및 증빙서류)의 경우 서류의 양이 많아 한권으로 제본이 어려울 경우 분권 제본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세부지침은 없습니다. ▸ 분권 제본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153	46	[첨부2] 8. ①, ②.	• ① 항목 중 (1)~(4)는 USB 제출 외에 각각 A2 크기로 제출인지, 아니면 A2 내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A2 1매로 제출인지 질의 드립니다. • (5)~(6)은 USB 제출 외에 각각 A1 크기로 제출인지, 아니면 A1 내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A1 1매로 제출인지 질의 드립니다.	▸ (1) 종합배치도~(5) 전체조감도는 이미지 수 1개로 제한하며, (6) 세부조감도는 이미지 수에 제한은 없으며 항목별 매수는 1매입니다.
154	46~47	[첨부2] 8. ③	•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사업제안 발표를 한다면, 발표자료는 공모제출일인 10월 28일이 아니라 이후 공지되는 평가일에 맞춰서 제출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발표자료는 별도 제본 없이 PPT파일만 제출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제본된 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발표 자료의 표지 양식은 제공되지 않은 바, <양식1 표지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또한, 발표자료의 원본/사본 제출부수, 페이지 분량, 제본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발표자료 작성시 사업제안서처럼 칼라 허용이 가	▸ 제본하는 발표자료는 평가당일 약25부 제출 예정이며,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발표에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 형식(PPT 등)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능한지도 질의 드립니다. • 발표자료 작성시 Microsoft Office Powerpoint 프로그램 내 사용가능한 편집효과를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55	57	양식9	• 양식 하단에 신청인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상기 양식도 신청인 날인이 필요한지 질의 드립니다. • 날인이 필요하다면, 각 출자법인의 날인인지, 사업신청자인 주관사의 날인인지 질의 드립니다.	▸ 각 출자법인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156	59	양식11	• 소유주식수나 금액이 계속 변동되는데, 양식 작성시 기준 시점을 어떻게 하면 될지 질의 드립니다.	▸ 공모 공고일을 기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57	70	양식20	• 상기 양식의 경우 수행실적 개수에 따라 2장 이상 작성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양식20>은 제출 페이지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158	기타		• 사업제안서 관련하여 정해진 감점기준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감점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11조, 제13조, 양식6 등에 따라 사업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12	제9조 ②	• 핵심도입시설 조성 계획시 실내 인테리어 공사(마감공정)를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60	12	제9조 ②	• 핵심도입시설 준공 후, 운영법인에 분양 혹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운영법인이 핵심도입시설을 최소 10년 이상 책임 운영 후 분양(매각)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법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이가 충족될 경우 양도가 가능합니다. ▸ 본 지침에서 명확한 책임 운영기간(최소 10년 이상 책임 운영한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1	15	제11조 ⑥	• 사본의 경우에도 표지에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주관사)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본의 경우에도 사업신청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46쪽 7. 사업제안서 서류 제출」에 따라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시면 됩니다.

162	26	제24조, 제25조	• 제24조 ①항 3호 법인 설립 등기 완료에서의 법인과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같은 법인인지 질의 드립니다.	▸ 제2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과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동일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163	27	제25조 ⑤	• 컨소시엄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컨소시엄 구성원의 최소지분율 제한은 없습니다.
164	37	[첨부2] 2. 가. ⑧	• 사업성 분석기간 최소 30년은 ⓐ30년간의 책임운영을 의미하는 것인지, 30년간의 책임 운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최소 10년이상 책임 운영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모델로 사업성 분석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12쪽, 제9조 제2항」에서 “최소 10년 이상 책임 운영한다.” 명확한 책임 운영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책임 운영 기간 이후 사업계획은 사업신청자의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5	45	[첨부2] 6. ③	• A3용지 사용 시 매수의 제한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업제안서 형식 및 분량은 「46쪽, 7. 사업제안서 서류 제출 」에 따르되, 매수 산정 시 A3는 A4 2매로 인정하며 A3매수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166	46	[첨부2] 7.	• 1권, 2권, 3권 원본에 필요한 인감 날인은 표지인지, 표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전체 페이지(간인)인지 질의 드립니다. • 1권, 2권, 3권, 별권의 경우 원본(1부) 인감 날인 외에 사본(각 14부, 14부, 30부, 5부)에도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날인이 필요하다면, 표지에만 날인하면 되는지, 표지를 포함한 전체 페이지에 날인(간인)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인감날인 및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은 사업제안서 각 권(별권 포함) 표지에 날인을 의미합니다.
167	46	[첨부2] 7. ②	• 발표내용 및 발표자료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함에 있어 그 기준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글자의 색상, 모양, 크기, 이미지, 도식 등)	▸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고, 표현 형식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168	47	[첨부2] 7. ④	• 서류봉투의 규격이나 표지 양식의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169	48	[첨부3]	• 양식2~26의 제출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별도 서류봉투 제출인지, 별도 제본 제출인지, 제출부수 등) • 양식2~26의 첨부서류 중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중복 제출하는지, 중복되는 서류를 1부로 갈음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주무관청이 양식을 제시한 서류들은 본권(1권과 2권)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권에는 페이지 산정을 원하시지 않는 증빙자료 위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되는 서류는 각 법인별 1부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170	50	양식2	• 양식2의 첨부서류는 각 몇 부씩 제출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양식2의 첨부서류는 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됩니다.
171	58	양식10	• 개별 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공동) 이상일 경우, 대표자 선임 후, 대표법인 선임서를 포함하여 다른 양식 날인 시 선임된 대표자 1인만 날인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공모지침 <양식10>에 따라 개별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공동)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대표법인 선임서)하고 대표자 1인만 날인하시면 됩니다.
172	2		• "문화집객시설"의 별도 용도 제한은 없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도 제안이 가능한지?	▸ 문화집객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시설,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공모지침서 6페이지 실시계획 변경안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여야 합니다.
173	6		• 지원시설용지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의 단위별 세대수 및 세대규모의 제한이 있는지? • 영상문화복합단지 직원 및 국내외 관광객 집객을 위한 기숙사,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원시설내 업무시설 외 해당용도 시설의 추가 계획은 없는지?	▸ 세대수 및 세대규모 등 제한사항은 없으며, 사업신청자의 자율 제안사항입니다. ▸ 기숙사, 호텔 등 숙박시설은 추가 계획이 없습니다.
174	12, 13		• 핵심사업자가 핵심테넌트의 역할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상 별도의 핵심테넌트를 유치해야하는지	▸ 핵심테넌트 유치는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자가 적의 판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5			• 투자 5-2, 5-3, 6BL 개발 계획은? (도입 시설, 분양 및 추진 시기 등)	▸ 투자유치용지 5-2BL과 6BL은 투자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5-3BL은 인접한 국제업무단지 및 상업용

				지에서 발생하는 학령인구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 1개소(48학급), 중학교 1개소(28학급)의 규모로 국제업무단지 준공시점(2028년 12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6	9	제7조 ②	• 공증된 위임장이란 법무부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협약서는 (별권)부속 및 증빙서류 중 '<양식2>공모참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법인간 권리관계 및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서와 <양식10> 대표법인 선임서를 모두 공증 받아 사업제안서 1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기관이란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업무를 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문서 확인절차)을 받고 국내기관의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와 별도로, 공모참가 신청 현장접수(10월 28일) 시, 사업신청자 대표 혹은 대표의 위임장(양식없음, 법인인감날인 필요)을 받은자에 한하여 공모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자가 사업신청자 대표가 아닐 경우 「16쪽, 제12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주관사 대표로 부터로의 사업제안서 접수에 대한 위임장과 함께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는 제1권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12	제9조 ②	• '운영법인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할 수 있다'함은 운영법인 구성시 출자자 또는 핵심사업자의 일부로만 구성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예:①출자자만(또는 일부)으로 구성, ②핵심사업자만(또는 일부)으로 구성, ③출자자 일부와 핵심사업자 일부로 구성)	▸ 「12쪽, 제9조 제2항」의 "제3자"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법인의 구성은 출자자와 핵심사업자로만 구성(출자자 및 핵심사업자 중 일부 또는 전체)을 사업신청자가 제안하시면 됩니다.

178	12	제9조 ②	• 실내 스튜디오의 총 건축연면적 7,000평기준에 실내 스튜디오의 공용면적(부속창고,복도,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 실내스튜디오의 건축연면적 기준은 영상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순수 면적으로 공용면적(부속창고, 복도, 지하주차장 등)은 불포함 면적 기준입니다.
179	13	제9조 ③	• 공모작업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지의 CAD자료(교통종합개선안도.dwg, 지구단위계획결정도.dwg, 공사계획평면도.dwg)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답변과 함께 제공 가능한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180	20, 38	제16조, [첨부2] 2. 나. ①	• 제16조(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재원조달계획이 “사업신청자”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첨부2]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의 목차 기준에는 재원조달계획이 “사업계획서”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배점기준의 구성과 사업제안서 목차의 구성이 상이함) 이에 사업제안서 작성은 ‘[첨부2]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목차 기준‘에 맞추어 재원조달계획은 사업제안서 1권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사업제안서 2권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 1권은 사업신청자 구성 및 현황의 부속서류가 다량일 것을 고려하여 분류하였으며, 재원조달계획은 '사업계획'에 해당하고 매수 산정이 반영되어야 하여 2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1	40	[첨부2] 3. ①	• (1) 본 지침 제6조의 ‘사업신청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방법은 사업제안서(제1권)이 아닌 사업제안서(별권)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 <양식 13> ~ <양식 25>는 사업제안서(별권)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 제6조의 사업신청자 자격 증빙 서류는 별권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문서 확인절차)을 받고 국내기관의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이 양식을 제시한 서류들은 본권(1권과 2권)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권에는 페이지 산정을 원하시지 않는 증빙자료 위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2	40	[첨부2] 3. ②	• 외국법인의 경우 업역과 형태가 국내법인과 상이하여 경우에 따라 신용등급평가서를 제출하기 힘든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환산점수표에 외국법인이 포함될 시 공모사업의 특성상 배점에 불이익이 우려되어, 우수한 투자자이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기 힘든 다수의 외국법인에 참여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적극적이며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법인을 제외한 국내 출자자들만으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신용도 평가시 외국법인 제외 사례 :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공모,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공모)	▸ 본 공모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사업신청자 자본금의 30% 이상이 필수조건인 사업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법인의 신용등급은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지침변경은 불가합니다.
183	40	제17조 ③, [첨부2] 3. ②	• 본 사업의 목적인 경쟁력있는 영상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핵심사업자들의 참여와 출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수한 영상관련 핵심사업자들 중에는 신용평가등급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으며 이들은 배점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공모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등급 환산점수표 산정시 모든 출자자가 아닌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주관사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침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주관사 신용도만으로 평가한 사례 :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공모)	▸ 핵심사업자의 출자는 필수조건 사항이 아니며, 사업제안서 평가 시, 사업신청자가 작성한 <양식16> 신용등급 환산점수표를 참고하여 상대평가 예정입니다. 지침변경은 불가합니다.

184	40	[첨부2] 3. ②	• 국내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 국내기관이란 '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업무를 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단,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문서 확인절차)을 받고 국내기관의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5	15, 40	제11조 ⑦, [첨부2] 3. ②	• 신용평가자료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행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공모마감일 당일까지 유효하면 인정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공모마감일 당일까지 유효합니다.
186	41	[첨부2] 3. ⑤	• 자기자본 투입계획을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컨소시엄구성원별로 <양식19> 4) 자금 투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침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투입계획서 작성의 의미입니다.
187	46	[첨부2] 7.	• 원본 인감날인 및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은 사업제안서의 표지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모든 제출서류(부속 및 증빙서류 등)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인감날인 및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은 사업제안서 각 권(별권 포함) 표지에 날인을 의미합니다.
188	46	[첨부2] 8.	• 도면(6)세부조감도는 A1사이즈 범위안에서 여러개의 조감도로 분할하여 구성하는것도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자율적으로 A1 도판에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89	46	[첨부2] 8. ③	• 사업제안서 발표자료는 지정된 작성기준(형식, 매수 등) 및 제출방법등이 어떻게되는지, 혹시 사업제안서 3권(사업제안서 요약)이 발표자료로 사용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발표자료 작성시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에서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텍스트의 압축, 배치의 변경 등 일부 편집을 통한 표현방식의 재구성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제본하는 발표자료는 평가당일 약25부 제출 예정이며, 발표자료의 내용은 사업제안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발표에 사용하는 자료의 표현 형식(PPT 등)은 사업제안자 자율 표현 가능합니다. 발표자료 세부사항은 본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190	49	양식1	• 사업제안서는 1권, 2권, 3권, 별권로 구성되어 있는 바 권별 구분을 위하여 제시된 <양식1 표지서식>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권별 명칭을 추가 표기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변경예시>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 사업제안서 －제2권 사업계획서－	▸ 변경 예시와 같이 양식을 준용하여 사업제안서 권별 명칭을 추가 표기 가능합니다.
191	61, 62	양식13, 양식14	• 작성기준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인지 개별재무제표 기준인지 질의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의 경우 연결대상 회사들의 금액 등이 합산되어 해당 법인의 금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연결대상의 변동에 따라 재무비율의 분석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